

판 결

사 건 [REDACTED] 건물인도

원 고 [REDACTED]

[REDACTED]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유

담당변호사 [REDACTED] 조효동

피 고 [REDACTED]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[REDACTED]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
가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[REDACTED]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[REDACTED]의 각
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[REDACTED]부분 [REDACTED]를 인도하고,

나. 1,270,000원과 이에 대하여 [REDACTED]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
산한 돈과 [REDACTED]부터 위 가.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
77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